

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옥재은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8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옥재은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원중, 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김혜지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 박 석, 박춘선, 박환희, 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신복자, 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병운, 이봉준, 이승복, 이은림, 이종배, 이종환, 이효원, 이희원, 정지웅, 채수지, 최유희, 허 훈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50명)

1. 제안이유

-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는 등 형해화되고 있어, 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하여 활용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
- 또한 북한주민 인권 문제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,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- 현재 부서 업무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문에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명시하고 조례명, 기금·위원회 명칭 등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

-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시 기금운용 전문가를 포함하고 적절한 규모로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」로 함
- 나. 목적에 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추가함(안 제1조)
- 다.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)
- 라. 기금의 명칭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원 사업과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을 신설함(안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 제4호, 제5호)
- 마. 위원회 명칭을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정원을 30명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축소함. 또한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을 신설함(안 제5조, 제8조, 제9조)
- 바.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·자립 지원,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, 「남북협력기금법」,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”을 “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협력사업”을 “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”으로,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)”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(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)을 매년”으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”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” 으로, “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” 을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” 으로 한다.

제3조의2 본문 중 “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” 을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” 으로 한다.

제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통일문화조성사업” 을 “평화통일문화조성사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” 를 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 로 한다.

4. 「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지원 사업
5.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” 를 “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 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” 를 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” 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” 를 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설치” 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남북교류협력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” 으로, “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” 를 “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촉진” 을 “촉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” 으로 하며, 같은 조

제3호 중 “평화·통일 교육 기본계획” 을 “평화·통일 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지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인도적 지원” 을 “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” 으로 한다.

5. 북한이탈주민 정착·자립 지원 등

제9조제1항 중 “30명 이내” 를 “20명 이내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남북교류협력” 을 각각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” 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제12조 중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” 으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 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평화·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」”로 하고, 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”를 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”로 하고, “남북교류협력위원회”를 “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”로 하고, “남북교류협력기금”을 “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서울특별시 <u>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</u></p>	<p>서울특별시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,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, <u>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"북한"이라 한다)의 주민(법인·단체를 포함한다.이하 같다)이 공동으로 문화·체육·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<u>협력사업(이하 "남북교류협력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<u>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(이하 "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</u>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제2장 <u>남북교류협력기금</u> 설치 및 운용	제2장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기금</u> 설치 및 운용
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) ① 시장은 <u>남북교류협력사업</u>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</u> 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	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) ① -----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사업</u> ----- <u>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기금</u> -----.
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<u>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</u> 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기금</u> ----- ----- -----.
제4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. 1.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2. <u>통일문화조성사업</u> 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. 「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조례」에 따른 지원사업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4조(기금의 용도) ----- ----- 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평화통일문화조성사업</u> 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4. 「 <u>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</u> 」에 따른 지원 사업 5. <u>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</u>

현행	개정안
<p>4. (생략)</p> <p>5. 그 밖에 <u>남북교류협력위원회</u>에서 심의·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</p>	<p>6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7. ----- <u>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</u> -----</p>
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생략)</p> <p>②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<u>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</u> ----- -----.</p>
<p>제3장 <u>남북교류협력위원회</u> 설치 및 운영</p>	<p>제3장 <u>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</u> 설치 및 운영</p>
<p>제8조(<u>남북교류협력위원회</u> 설치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<u>남북교류협력</u>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</u>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남북교류협력사업</u>의 총괄·조정 2. <u>남북교류협력</u>의 <u>촉진</u> 3. 「서울특별시 <u>평화·통일 교육</u>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<u>평화·통일 교육 기본계획</u> 4. 기금의 운용 및 관리 5. <u>남북교류협력기반</u>의 <u>조성과 민간 교류 및 평화·통일 교육 지원</u> 6. <u>인도적 지원</u>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 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	<p>제8조(<u>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</u> 설치) ----- ----- <u>남북교류협력</u> 및 <u>평화통일기반조성</u> ----- <u>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남북교류협력</u> 및 <u>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</u>의 총괄·조정 2. <u>남북교류협력</u>의 <u>촉진</u> 및 <u>남북교류협력기반조성</u> 3. 「서울특별시 <u>평화·통일 교육</u>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<u>평화·통일 교육 기본계획</u> 및 <u>교육지원</u> 4. (현행과 같음) 5. <u>북한이탈주민 정착·자립 지원</u> 등 6. <u>북한인권 증진</u> 등 <u>인도적 지원</u>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 7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30명 이내</u>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 근무하는 자 2.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 ~ 4. (생략) <p><신설></p>	<p>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----- ----- <u>20명 이내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</u> ----- 2.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</u> ----- 3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</u>
<p>제12조(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) 시장은 제2조제1항의 <u>남북교류협력사업</u>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) ----- -----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민간인 국외여비 지원) 시장은 제2조제1항의 <u>남북교류협력사업</u>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민간인 국외여비 지원) ----- ----- <u>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</u>----- ----- -----.</p>

문서 번호

2023101300000042

비용추계서

요청인 : 옥재은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
이정수 팀장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3.

회신일 : 2023.10.25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재정분석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(기금의 용도)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,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의 기금사용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안 제4조(기금의 용도)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,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비용

나. 전제

- 서울시 행정국 제공자료(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(안)) 준용
- 제4조(기금의 용도)제4호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사업¹⁾은 자원봉사, 창업 지원, 언어통합,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기준으로 추계
- 제4조(기금의 용도)제5호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²⁾은 북한인권 인식 제고와 북한인권 증진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기준으로 추계
-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4~2028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4년~2028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 행정국 제공자료를 준용하여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= 5,500,000천원(연평균 1,100,000천원)

1)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운영 / 중장년 탈북민 창업 지원 / 북한이탈주민 언어 적응 지원 등 / 탈북민-일반시민 간 교류 및 대시민 인식개선

2) 북한인권 콘텐츠 제작 및 홍보 / 북한인권 증진 민간단체 지원(제안 및 공모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 (2024)	2차년도 (2025)	3차년도 (2026)	4차년도 (2027)	5차년도 (2028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 (a)	-	-	-	-	-	-
세출	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사업비(안 제4조제4호)	700,000	700,000	700,000	700,000	700,000	3,500,000
	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(안 제4조제5호)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400,000	2,000,000
	소계 (b)	1,100,000	1,100,000	1,100,000	1,100,000	1,100,000	5,500,000
□ 총 비용(b-a)		1,100,000	1,100,000	1,100,000	1,100,000	1,100,000	5,500,000

주: 서울시 행정국 제공자료 준용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손제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안 제4조(기금의 용도)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,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의 기금사용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= 5,500,000천원

- 산출방식 = $\sum_{i=1}^5$ (연간북한이탈주민인식개선및사회통합사업비+연간북한인권증진및인식제고사업비);

i = 비용추계 연차(2024년~2028년)

나. 연비용 = 1,100,000천원

=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사업비 +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비
= 700,000천원 + 400,000천원

○ 연간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사업 비용 = 700,000천원
= 자원봉사 + 창업지원 + 언어통합 + 인식개선
= 60,000천원 + 150,000천원 + 90,000천원 + 400,000천원
= 700,000천원

○ 연간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비용 = 400,000천원
= 북한인권 인식 제고 + 북한인권 증진 민간단체 지원
= 100,000천원 + 300,000천원
= 400,000천원

〈북한인권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사업 비용〉

(단위 :천원)

관련 조항	예산과목	구 분	금 액
제 4조(기금의 용도) 제 4호	사무관리비 (210,000)	탈북민 자원봉사단 운영	60,000
		중장년 탈북민 창업지원	150,000
	민간경상사업보조 (490,000)	남북 언어통합 지원사업	90,000
		사회통합 및 인식개선	400,000
제 4조(기금의 용도) 제 5호	사무관리비 (100,000)	북한인권 인식제고	100,000
	민간경상사업보조 (300,000)	민간단체 활동지원	300,000
합계			1,100,000

자료: 서울시 행정국